

1996. 5.

光州廣域市西區保育施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

社 會 都 市 委 員 會

光州廣域市西區保育施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6年 5月
社會都市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6年 4月29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提出者
- 나. 回附日字 : 1996年 4月 29日
- 다. 上程日字 : 第55回 西區議會(臨時會) 會期中
第1次 社會都市委員會(1996年 5月 7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家庭福祉課長 李 恩 愛)

가. 提案 事由

- 현대사회의 산업화,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어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,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

나. 主要骨子

- 제4조(운영관리)중 위탁 운영에 있어 "의회의 의견수렴 사항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- 제5조(수탁시설장 자격) 수탁시설장 자격에 관한 사항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吳 龍 洙)

-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제4조 제1항 운영관리에 있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되 "의회의 의견을 수렴"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
-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근거에 지방보육위원회를 설치 지방보육위원회로 하여금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,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 수렴해야 함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와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이므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동조례 제5조 수탁시설장 자격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[별표3]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을 준용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탁시설장 자격 기준을 개방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, 보육서비스를 제공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論 要旨 : 생 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 음

8. 其他 事項 : 없 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“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”를 “위탁운영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탁시설장 자격)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[별표3] 보육시설 종사자수와 자격기준의 제3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증 직종별 자격기준란의 시설장 자격기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